

조선왕실 무덤, 園의 창안과 전개

김이순

金伊順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
한국근현대미술사

I. 머리말

조선에는 최고 통치자의 무덤인 '陵'과 일반인 무덤인 '墓' 사이의 등급으로 '園'이라는 독특한 무덤제도가 있었다. 왕의 私親이나 왕세자와 세자빈의 무덤을 園制로 조성했는데, 능보다는 덜 장대하고 묘보다는 더 예를 갖춘 절충적인 형식의 무덤이다. 그러나 원이라는 무덤제도가 조선 초기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 중기에 反正으로 왕위에 오른 仁祖(재위 1623~1649)가 私親의 무덤을 追崇하기 위해서 창안해낸 것이다. 五禮儀가 엄격하게 지켜졌던 조선왕실에서는 왕과 왕비의 무덤만을 능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인조는 원제를 창안하여, 왕이 아니었던 사친의 무덤을 興慶園과 毓慶園으로 각각 추봉하여 일반 왕족의 무덤과 차별화시켰다.¹

인조가 조성했던 원은 능으로 추송되면서 곧 사라졌지만,² 英祖(재위 1724~1776)가 園制를 계승하여 생모 淑嬪 崔氏(1670~1718)의 무덤을 昭寧園으로 封園하였다^{도1}. 이때 숙빈 최씨는 후궁의 신분이라 신주를 宗廟에 모실 수 없었기 때문에 생

* 필자의 최근 논저: *Images of Familial Intimacy in Eastern and Western Art* (공저), Leiden, Boston: Brill, 2014; 『세종실록』의 후릉(厚陵) 산릉제도 기록에 대한 고찰, 『정신문화연구』36, 2013. 1; 『대한제국 황제릉』, 소와당, 2010; 『昌陵의 왕과 왕후 능의 위치 再考』, 『미술사학연구』267, 2010.

¹ 『弘齋全書』에는 “園墓는 능침 다음으로 소중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園을 봉한 제도는 仁廟 때 興慶園, 毓慶園에서 시작되었는데”라고 밝히고 있다. 『弘齋全書』卷十一, 「序引四」, 「園墓引」.

² 인조는 1632년에 生父 定遠大院君을 元宗으로 추존하고 어머니의 무덤을 합장하여 長陵으로 陵號를 올렸다. 따라서 현재 흥경원과 육경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소령원 원상 및 석물
1753년
경기도 파주

모의 신주를 모시던 사당인 毓祥廟를 毓祥宮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조선 특유의 원제는 '宮園制'로 확대되었다. 高宗(재위 1863~1907)은 궁원제를 개편하여, 왕의 사친은 물론 왕세자와 왕세자빈, 왕세손의 사당과 묘를 일반 왕족들보다 한 단계 격상시켜 원제 대상의 범위를 확장시켰으며, 明宗(재위 1545~1567)의 세자였던 순회세자(1551~1563) 묘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封園하고, 1904년에는 태자비 민씨의 무덤을 원(裕康園)으로 조성했다. 현대에 조성된 영친왕의 英園(1970)과 황세손 이구의 懷仁園(2005)을 포함하여 조선왕실 원은 총 21기가 조성되었는데,³ 그중에서 15기가 현존한다.

왕릉에 비해 園은 규모가 작지만, 사친이 왕이나 왕비 출신이 아닌 왕이 효도의 상징으로, 나아가 왕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의 일환으로 조성한 무덤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방계에서 왕위를 계승했을 경우, 또는 왕의 생모가 후궁이었을 경우, 그리고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원으로 조성된 무덤은 조선왕조의 王統을 잃어내는 데 귀중한 사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선행 연구로는 소령원에 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淑嬪崔氏資料集』(한국학중앙연구원, 2009)이 있으며, 궁원제의 성립과 변천을 살핀 논문들이 있는데,⁴ 이 연구들은 영조의 궁원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

³ 영원과 회인원은 조선왕실이 아닌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 의해 조성되었다. 영친왕의 장례는 장의 위원회(위원장 이효상 국무총리)에서 주관했으며(『경향신문』, 1970. 5. 6), 황세손 이구의 장례는 황세손장례위원회(공동위원장 유홍준 문화재청장, 이황의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사장)에서 주관하고 이해찬 국무총리가 조사를 낭독하는 선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했다. 『연합뉴스』, 2005. 7. 24.

⁴ 궁원제 관련 연구 논문에는 鄭景姬,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서울학연구』23(2004), pp.157-193, 임민혁, 「조선후기 영조의 孝梯 논리와 私親追崇」, 『조선시대사학보』39(2006), 박금진, 「영조 사친 숙빈 최씨의 궁원 의물 연구」(한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가 있다.

표1 조선왕실 13기의 園號 및 피장자

신분	基數	園名	피장자			封園 시기	
사친	母	6	순강원	인빈 김씨	선조후궁-원종 생모	1755	추봉
			소령원	숙빈 최씨	숙종후궁-영조 생모	1753	추봉
			수길원	정빈 이씨	영조후궁-진종 생모	1778	추봉
			수경원	영빈 이씨	영조후궁-사도세자 생모	1899	추봉
			휘경원	수빈 박씨	정조후궁-순조 생모	1823	
			영휘원	순헌귀비 엄씨	고종후궁-영친왕 생모	1911	
父母	1	홍원	홍선대원군	고종 생부모	1908	추봉	
세자	3	순창원	순회세자	명종의 세자	1870	추봉	
		소경원	소현세자	인조의 세자	1870	추봉	
		효창원	문효세자	정조의 세자	1870	추봉	
세자빈	1	영회원	소현세자빈	인조의 세자빈	1870	추봉	
세손/원손	2	의령원	의소세손	영조의 세손	1870	추봉	
		승인원	원손 이진	고종의 원손	1923		

선왕실 원의 고유한 특성이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미술사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고에서는 근래에 조성된 영원과 회인원을 제외하고 현존하는 13기의 원^{표1}을 중심으로, 조선왕실에서 원이라는 무덤제도를 창안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園所 구성의 특징을 고찰하고, 나아가 중국의 능묘제도에서 조선의 원제에 상응하는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조선왕실 원의 고유성과 역사적 가치를 밝히고자 한다.

II. 조선왕실 園制의 창안과 전개

조선은 물론 중국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원제 무덤의 기원은 어디에 있으며 그 등장 배경은 무엇일까. 園이라는 용어는 이미 중국 漢나라 때부터 존재했지만, 무덤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었다. 인조는 '園'이라는 용어를 임의로 차용하여 중국 전례에도 없는 독특한 무덤제도를 창안하였고, 후대의 왕들이 이를 계승하면서 조선왕실의 고유한 무덤제도로 정착시켰다. 그 과정을 3단계, 즉 인조가 원제를 창안한 시기, 영조가 궁원제로 정착시킨 시기, 고종이 원제의 대상자를 사친뿐 아니라 세자와 세손으로까지 확대시킨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원제 무덤의 등장

1623년에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사친 추승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조의 생부 定遠大院君(1580~1619)은 선조의 후궁 인빈 김씨의 아들로, 광해군 11년(1619)에 사망했고 무덤은 경기도 양주에 있었다.⁵ 인조는 인조 4년(1626) 2월에 생모가 사망하자 장지를 경기도 김포로 결정하는데, 이때 사친을 존송하는 방법으로 묘에 이름을 지을 것을 생각하고,⁶ 1626년 3월 12일에 備忘記로, “私親 산소의 墓號를 漢나라의 고사에 의거하여 義定하라”고 지시했다.⁷ 홍문관에서 한나라의 고사를 살핀 결과를 보고한 내용이 『승정원일기』 3월 15일자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한나라 宣帝가 황제에 오른 뒤에 ‘아버가 士이고 아들이 천자이면 제사를 천자의 예로 모신다’는 전례에 따라, 생부모의 尊號를 올려 皇考라 하고 사당을 세웠으며, 원에 寢殿을 만들고 시절마다 제사를 올렸다는 故事를 상고하면서, “兩漢에 걸쳐 私親을 높이 받든 황제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桓帝, 靈帝 같은 이들은 모두 자신의 친생 考妣(돌아가신 부모: 필자 주)를 추존하여 皇 또는 后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葬地를 바로 陵이라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예를 무시하고 제도에 어긋난 처사여서 밝으신 성상께서도 매우 싫어하시어 그렇게 하려고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宣帝는 ‘陵’자를 피하여 쓰지 않고 ‘園’이라고 칭하였는데, 이 밖에는 달리 근거 삼을 만한 고사가 없습니다.”라고 보고했다.⁸

이 상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신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다. 좌의정 尹昉은, “‘陵’자는 이미 쓸 수가 없고 ‘園’자 역시 근래에는 쓰지 않는 것이니, 성상의 하교대로 ‘墓’자 위에 명칭을 붙여 일반 묘와 구별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라 하였고, 우의정 申欽은, “김포 산소에 묘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예조에 내리신 전교를 삼가 보았는데, 홍문관이 널리 고사를 상고한 끝에 아뢰는 내용을 보니 홍문

⁵ “기미년에 내가 大故를 당하였었는데 그때 시키하고 질투하는 것이 날로 극심하였고 또 다그치고 감시하는 변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임의대로 卜山하지 못하였고 외가의 산소 근처에 임시로 장사지냈다.”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1월 21일조.

⁶ 조선시대에는 왕족의 墓라 하더라도 墓號를 짓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세조가 아들 懿敬世子の 무덤을 懿墓라 칭한 적이 있고(『세조실록』, 세조 5년(1459) 9월 26일조), 연산군이 어머니의 묘를 懷墓로 칭하였다. 그리고 중종이 연산군의 묘에 墓號를 지을 것을 논의하게 한 적이 있다. 『중종실록』, 중종 7년(1512) 11월 24일조.

⁷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3월 12일조.

⁸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3월 15일조.

관이 상고해 낸 것은 墓가 아니고 園에 관한 일이어서 전교하신 본의와는 어긋난 것이며, 게다가 園의 기원을 고찰해 보면, 三代 이전에는 墓祭가 없었다가 진시황이 묘 옆에 寢殿을 두었는데, 한대에 진대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 모든 능에 침전을 두어 생시에 기거하던 것과 똑같이 의복 등 모든 용구를 갖추어 두고 ‘寢園’이라 이름 하였 습니다. 이것은 太上皇 이하 高帝, 惠帝, 文帝, 景帝 대에 각기 모두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원이란 바로 능을 달리 부르는 칭호로서, 옛사람들의 문자에도 園陵이니 寢園이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곧 園은 천자와 제후에 공통되게 말하는 것이지, 묘의 위, 능의 아래에 별도의 ‘園’자를 두어 그것으로 위아래의 등급을 매겨서 陵이니 園이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중략) 지금 만약 묘를 원으로 고쳐 부르려고 한다면 처음으로 시작되는 일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신중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성상의 하교대로 ‘墓’자 위에 색다른 명칭을 붙여 다른 묘와 차이가 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하였다.⁹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인조는 ‘園’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겠지만, 결국 園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며 다음과 같이 하교한다.

帝와 王, 두 가지 호칭이 본디는 높고 낮은 차이가 없었으나 秦代에 이르러 구별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준행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陵과 園을 비록 통칭한다고는 하나 漢代, 宋代에 헤아려 정한 것이 어찌 그만한 뜻이 없겠는가. 더구나 園은 본디 陵名을 僭逼(지나치게 꺾박함: 필자 주)하는 것이 아닌 데야 더 말할 나위가 있는가. 한나라 宣帝의 고사대로 金浦의 산소를 아무 園이라고 칭하여 다소 구별하는 뜻을 보존하라.¹⁰

이로써 조선왕실에서 園은 陵에 버금가는 무덤제도로 등장하게 된다. 인조는 1626년 4월 1일에 양주 정원대원군 무덤의 원호를 興慶園으로 올리고¹¹ 어머니 연주부부인 구씨(계운궁) 산소의 원호를 毓慶園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해야 할 예조에서 이행하지 않자 우부승지 金壽賢이 대신해서 집행한다.¹² 園號에 대해 반대하는 대신들의 의견이 잇달았고, 4월 10일에는 “園으로 호칭하는 문제는 宣祖께서도 행한 적이 없는 일”로 부모에 대한 정에 끌려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⁹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3월 20일조.

¹⁰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3월 26일조.

¹¹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4월 1일조.

¹²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4월 3일조.



2
章陵
1632년
경기도 김포

안 된다는 등의 반대 상소가 올라왔지만, 인조는 이미 결정된 일을 논하는 것은 늦었다며 상소를 물리쳤다.¹³ 1627년에 양주의 흥경원을 김포로 이장하고, 1632년에는 정원대원군을 元宗으로, 계운공을 인현왕후로 추존하였으며, 흥경원을 章陵으로 추송하고² 육경원을 합장하면서 원제의 무덤은 곧 사라졌다.

인조가 사친의 무덤을 원으로 추봉한 이후, 1753년에 영조가 사친의 무덤을 원으로 승격시키기 전까지 원제로 조성된 무덤은 없다. 그러나 조선왕실에서 원제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1645년 4월 26일에 소현세자(1612~1645)가 죽었을 때 원제에 대해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吏曹에서 올린 서류 중에 세자묘를 지키는 '守園官'이란 직책에서 '園'자가 합당한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아뢰라는 기록이 보인다. 吏曹에서 "園자는 대체로 옛날 태자에게 호칭했던 것을 모방한 것"이고 따라서 '守園'이라는 호칭도 근거할 만한 것이라고 했지만, 인조는 '守園官'을 '守墓官'으로 고치게 하고,¹⁴ '園所都監'이란 명칭에서 '園所'를 '墓所'로 낮춘다.¹⁵ 이러한 사실은 소현세자의 아들 즉, 원손을 세자로 삼지 않고 봉림대군(효종)을 세자로 책봉한 사실과 함께 인조와 소현세자 간의 갈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또한 景宗(재위 1720~1724)은 생모 희빈 장씨의 懷墓를 園으로 추송할 수 있었으나 封園하지 않고,¹⁶ 1722년에 玉山府大嬪으로 추존하고 신주를 봉안하기 위

¹³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4월 10일조.
¹⁴ 『인조실록』, 인조 23년(1645) 4월 27일조.
¹⁵ 『인조실록』, 인조 23년(1645) 5월 23일조.
¹⁶ 『숙종실록』, 숙종 27년(1701) 10월 7일조.

한 大嬪宮만을 건립했다. 요컨대 인조 이후에 영조가 생모의 무덤을 소령원으로 봉원할 때까지 원제로 조성된 무덤은 없었지만 그 기간에 원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원이 조성되지 않았을 뿐이다.

2. '宮園制'의 성립과 원제의 정착

영조가 왕위에 오른 지 29년 만인 1753년에 숙빈 최씨 묘를 소령원으로 추봉하면서 127년만에 원이 다시 등장했다. 인조는 원이라는 무덤제도만 제정했는데, 영조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적인 奉祀의 은전을 받지 못하는 생모를 추념하여 사당을 짓고 이를 毓祥宮이라 칭했다. 단순히 무덤을 추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왕을 위한 종묘와 왕릉에 상응하는 제도로서 '宮園制'를 마련한 것이다.¹⁷

영조는 개인의 효심에서 원제를 부활시켰지만, 영정조 시대에 걸쳐 원제는 크게 확산되어 조선왕실의 고유한 장묘제도로 정착되었다. 영조는 52년이라는 긴 통치 기간 동안 두 명의 왕비와 네 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왕비들과의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고, 후궁들이 낳은 자녀들 중 두 아들(효장세자와 사도세자)과 장손(의소세손)이 사망하여 결국은 次孫(정조)에게 왕통을 넘기게 된다. 이렇게 연속된 薨逝로 인하여 조선왕실의 원은 영조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조선왕실에서 조성한 21기의 원 중에서 6기가 영조 재위 연간(1724~1776)에 봉원되거나, 영조대에 조성된 묘가 후대에 원으로 추봉된 것이다.¹⁸ 한편 24년 동안 재위했던 정조(재위 1776~1800)대에는 조모(사도세자 생모)의 수경원, 아버지(사도세자)의 현릉원, 후궁(순조의 생모)의 휘경원, 아들(문효세자)의 효창원, 후궁(원빈 홍씨)의 仁明園까지 포함하여 총 5기가 조성되었는데, 이 중 인명원은 법도에 어긋난다고 하여 원호를 없앴다.

仁明園과 관련해서 후궁의 무덤에 대한 조선왕실의 원칙을 살펴볼 수 있다. 정조는 1779년 5월 7일에 첫 후궁인 元嬪 홍씨(1766~1779)가 죽자 당나라의 '開元禮'와 명나라의 妃嬪의 예에 의거하여 시호를 仁淑, 궁호를 孝徽, 원호를 仁明이라고 추증한다.¹⁹ 중국의 예에 따라 후궁에게 궁호와 원호를 내렸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원빈 홍씨의 오빠 홍국영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고,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궁원

¹⁷ 宮園制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鄭景姬, 앞의 글(2004) 참조.
¹⁸ 6기의 원은 소령원(숙빈 최씨), 순강원(안빈 김씨), 수길원(정빈 이씨), 수경원(영빈 이씨), 영우원(사도세자), 의령원(의소세손)이다.
¹⁹ 『정조실록』, 정조 3년(1779) 5월 7일조.

제를 만든 영조였다. 영조가 후궁인 嬪도 궁원제에 포함시킬 것을 유명으로 남겼기 때문이다. 영빈 이씨의 장례 후 영조는 직접 글을 써서 예조에 간직해 두라고 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후궁들이자 효장세자와 사도세자의 생모들이었던 정빈 김씨묘(수길원으로 봉원됨)과 영빈 이씨 의열묘(수경원으로 봉원됨)를 후일에 차례로 봉원하라는 것이었다.²⁰ 그러나 원빈 홍씨는 세자를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인명원은 조성된 지 7년 만에 원빈 홍씨 묘로 격하되었다.²¹

3. 원제의 확대와 ‘五廟五園’

영조 시대까지는 왕의 사친의 무덤만 원이 될 수 있었고 세자나 세자빈의 무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조는 즉위한 직후인 1776년 3월에 思悼世子の 존호를 莊獻世子로 올리고 宮號를 景慕宮으로 정했으며 무덤을 수은묘에서 永祐園으로 추승했다.²² 1789년에는 영우원을 경기도 화성으로 천장하면서 園號를 顯隆園으로 개칭했다. 이처럼 사도세자의 무덤이 봉원된 것은 세자의 무덤으로서가 아니라 정조의 사친으로서 추승된 것이다.²³

高宗에 이르러서는 원제의 대상이 세자와 세자빈, 그리고 세손으로까지 확대되어, 1870년에 순회세자, 소현세자, 소현세자빈, 의소세손, 문효세자의 묘가 원으로 추봉되었다. 이른바 “경오년의 五廟五園의 추승”으로, 이는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컸다.²⁴ 이 시기는 순조(재위 1800~1834)에 이어 세손인 憲宗(재위 1834~1849)이 왕통을 계승한 이후 적통의 계승이 어려워지면서 왕실에서 다시 종통의 유지 문제가 대두된 시점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근대화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자, 서양에서 들어 온 천주교의 박해로 프랑스군이 침공한 병인양요(1866)가 일어나고 강화도 조선왕실 사고가 불타는 등 유교이념이 도전받고 있었다.

²⁰ 『영조실록』, 영조 40년(1764) 11월 5일조.

²¹ 원빈 홍씨 묘는 사적 제200호 西三陵 정내에 마련된 후궁 묘역에 있다. 원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에 있었으나 1950년에 지금의 장소로 이장되었다.

²²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1776) 3월 20일조.

²³ 인조와는 달리, 정조는 생부의 무덤을 능으로 추봉하지 않았다. 현릉원을 용릉으로 추승한 것은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고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이순,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석물조각」, 『미술사학보』31(2008. 12), pp.63-100 참조.

²⁴ ‘五廟五園’은 1899년 수경원의 추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종이 “경오년(1870)에 대신이 五廟와 五園에 관한 의식 절차를 아뢴 예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것을 참작하여 하도록 하라.”는 고종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종실록』, 고종 36년(1899) 8월 23일조.

고종 즉위 이전에 세자의 무덤을 차별화해서 호칭하지 않았지만, 일반 왕족의 묘와 차등적으로 대우할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 숙종(재위 1674~1720)은 순회세자(1551~1563)와 소현세자(1612~1645), 두 묘에 대하여 다른 묘와 차등적인 대우와 관리를 다음과 같이 명하였다.

順懷·昭顯 두 묘의 節祀祭官은 으레 내관으로써 差遣하였으며, 술을 부어 잔을 드리는 일에 이르러서는 守僕을 시켜 이를 하게 하니, 몹시 미안한 일이다. 이제 秋夕節祀부터는 내관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두 묘는 園陵과 다름이 있더라도 事體는 또한 스스로 가볍지 않으니, 그런 까닭으로 묘 위에 탈이 있으면 예조의 당상관과 낭관이 나아가 간심하고 춘추에는 경기감사가 각 능을 봉심할 때에 일체로 간심하게 하며, 평상시의 守直은 別監에 지나지 않으니, 또한 매우 미안하다.²⁵

그러나 세자와 세손의 묘를 원으로 추봉한 것은 고종이다. 고종 7년(1870) 12월 6일에 열성조의 세자와 세손의 묘호를 원으로 높이라고 전교하고, 12일 10일에 원의 이름을 정하였다.²⁶ 이때 墓制로 조성되어 있던 세자와 세손의 산소들이 순창원(순회세자), 소경원(소현세자), 영회원(소현세자빈), 의령원(의소세손), 효창원(문효세자)으로 추봉되었다. 조선 중기에 시작된 원제가 이로써 조선 말기 고종대에 이르러서 완성된 셈인데, 영조가 제정한 사친의 궁원제에 세자를 포함시키면서 조선 왕실에서는 사친의 ‘宮園’과 세자의 ‘廟園’ 제도가 공존하게 되었다. 고종대에 추승되거나 새로 조성된 원으로는 순창원(順懷廟), 소경원(昭顯廟), 영회원(愍懷廟), 의령원(永昭廟), 효창원(文禧廟)의 ‘五廟五園’을 비롯하여 수경원, 흥원, 영회원이 있고, 순종대에는 승인원이 조성되었다. 오묘오원은 무덤은 원이면서 사당은 흠이 아닌 廟를 지닌 경우로, 고종이 추봉한 세자와 세자비 그리고 세손의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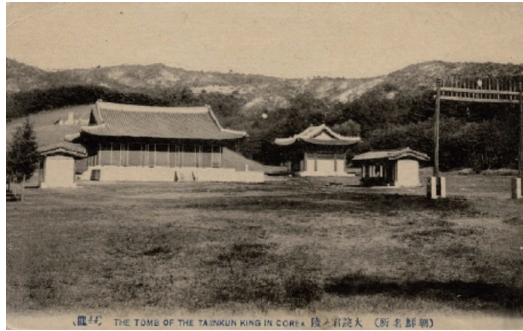
원제가 확대되던 시기에 세상을 뜬 흥선대원군(1820~1898)의 무덤은 능제가 아니라 원제로 조성되어 있다. 공덕리 아소정에 건립되었던 첫 무덤^{도3}은 묘제로 조성되었다가,²⁷ 1907년 순종 즉위 후에 大院王으로 추승되고 1908년에는 무덤이 파주 운천면으로 이장되면서 興園^{도4}으로 추봉되었다.²⁸ 조선의 대원군 제도는 선조의

²⁵ 『숙종실록』, 숙종 34년(1708) 8월 13일조.

²⁶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12월 6일조; 12월 10일조.

²⁷ 『승정원일기』, 고종 35년(1898, 광무 2) 2월 2일조.

²⁸ 『순종실록』 2권, 순종 1년(1908) 4월 9일조.



생부 덕흥군을 덕흥대원군으로 추존하면서 생긴 것으로, 인조의 생부 정원대원군, 철종의 생부 전계대원군, 그리고 고종의 생부 흥선대원군이 있다. 흥선대원군을 제외하고는 이들 모두 사후에 대원군으로 추존되었다. 덕흥대원군의 무덤은 아직 원제가 도입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현재 묘제로 무덤이 조성되어 있고, 정원대원군은 앞서 언급한 대로 왕(元宗)으로 추승된 후 무덤이 陵制(章陵)로 추봉되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대원군들의 무덤은 능, 원, 묘의 형식으로 현존한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조선왕실의 원으로는 영휘원과 송인원이 있다. 이 시점에는 원의 조성에도 일제가 개입하면서 조선의 전통이 희석되기 시작했다. 永徽園은 조선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私親인 순헌귀비 엄씨(1854~1911)의 무덤이다. 영친왕은 1900년에 황제국의 친왕으로 봉해지고 1907년에는 황태자로 책봉되었지만, 일제강점으로 인하여 국왕은 되지 못했다. 따라서 순헌귀비의 무덤이 원제로 조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검토를 요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당시 자작 趙重應(1860~1919)은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엄비는 내명부로서 상궁, 귀인, 순비를 거쳐 황귀비로 승차되었고 한때는 正后 승차설까지 있었으며 純宗에게는 庶母로 李嬭公에게는 諸母이며 더욱 皇太子에게는 生母인 까닭에 본래는 병세가 위독하면 私宮으로 나아가 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正宮에서 서거하였고 殯所도 正宮에 설치하였으며, 墓라고 해야 하나 이를 園(永徽園)으로 칭하게 되었으며 墓所는 처음에는 東九陵內 前崇陵 앞으로 정하였던 것이나 25일 洪陵 內로 개정한 것이다. 세태도 변전하고 또 皇太子의 生母인 까닭에 葬式을 破格 優遇하게 된 것이다.²⁹

²⁹ 『매일신보』, 1911. 8. 2.

3
흥선대원군묘 엽서 사진
근대

4
홍원
1908년
경기도 남양주



5
송인원
1922년
서울특별시 청량리

으로 책봉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고, 송인원은 조성과정에서 일본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그 자체가 조선왕실의 아픈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나 송인원은 조선의 전통 체제가 완전히 단절되기 이전에 조성되기 때문에 나름의 역사성을 지닌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원으로 숭봉된 대상은 왕의 사친에서 시작하여 세자와 세자빈, 세손, 원손, 세자의 사친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인명원이 묘로 낮춰지면서 후궁은 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로써 원은 왕이나 왕비가 되었어야 할 사람을 존송하는 제도가 되었다. 보통 왕이나 황제가 되어 개국을 하게 되면 그 조상을 왕이나 황제로 추승하던 조선과 중국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방계에서 즉위한 왕은 건국한 왕이 아니므로 자신의 선조를 몇 대에 걸쳐서 추승할 수 없었지만 사친만은 추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1차적인 원급 추존 대상으로 이어져 왔는데, 고종이 그 범위를 확대해서 왕이 되었어야 할 세자와 세손까지 소급 적용한 것이다. 고종은 작위 없는 사람과 ‘君’으로 봉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군의 칭호를 追贈하기로 하고, 태조가 추존한 선조의 아들들에게 모두 군의 직함을 추증하기도 했다.

Ⅲ. 園所의 체제와 石物

1. 園所의 배치와 구성

조선의 능·원·묘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간구성 및 석물의 체제이기 때문에 봉원을 하면서 능과는 물론, 묘와 분명한 차등을 두었다. 본고에서 살펴볼 13기의 원 중에는 처음부터 원으로 조성된 경우보다는 묘로 조성되었다가

순헌귀비의 장례에 일제가 개입 하긴 했지만 무덤은 조선왕실의 원제로 조성되었고, 전통적인 체제와 차이는 있을지언정 『純獻貴妃禮葬儀軌』(1911), 『純獻貴妃殯宮魂宮儀軌』(1911) 같은 의례까지 남겼다.

崇仁園은 고종의 원손 李晉(1921~1922)의 무덤이다⁵. 이진은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이후 세손



6
소령원 전경
1753년
경기도 파주

후에 원으로 승격된 경우가 많다. 즉 피장자가 사망할 당시는 원으로 특별대우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 되지 못해서 묘제로 무덤이 조성되었지만, 후대에 원으로 승격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는 무덤 조성시기와 봉원시기가 일치하지 않으며, 원으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무덤의 형상이 변경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원래의 형상이 완전히 변경된 것은 아니다. 대체로 무덤을 새로 조성하기보다는 묘제의 기본 형식에 원제에 걸맞은 의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무덤의 격을 높였다. 원은 능과 큰 차이가 없는 체제로 진입공간, 제향공간, 원침공간이 차례로 이어지며, 원을 관리하는 재실과 수복방, 수라간 등의 건축물이 조영되었다. 진입공간에는 금천교를 지나 홍살문, 판위, 향어로가 갖추어져 있다.³⁰ 제향공간은 5칸으로 이루어진 정자각, 제를 지내고 나서 축문을 태우는 예감, 산신에 대한 제를 지내는 산신석이 정자각 뒤에 있고, 피장자의 행적을 담은 비석이 있는 비각이 있다. 그리고 사초지 위에 원침공간이 있다.

묘에서 원으로 승격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령원을 들 수 있다^{도6}. 1718년(숙종 44년)에 영조가 숙빈 최씨의 장례를 치를 때는 아직 후궁의 아들 신분(연잉군)이었기 때문에 묘제에 해당하는 의물을 배설했다. 그러다 1744년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바로 숙빈 최씨의 묘에 昭寧이라는 墓號를 올렸으며, 1753년에 소령묘를 소령원으로

³⁰ 향어로의 명칭은 참도, 신도, 신로 등으로 불리며 이 용어들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의 의궤에서는 주된 향로와 작은 어로를 합쳐서 향어로로 기록하고 있다. 때로는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1601, 奎 14826)의 소부석소 기록에서처럼 신로와 협로로 칭하기도 했는데(自正殿至紅門 神路長一百九十二尺 廣七尺 狹路廣三尺 薄石布置),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1659)에서는 신로와 어로로 표현했고, 『효종영릉천릉산릉도감의궤』(1673)에서부터는 향어로로 표현했다.



7
숙빈최씨 신도비 귀부
1725년
경기도 파주

8
소령원 묘제석물
1718년
경기도 파주

추봉하고 무덤의 형식을 변경하였다. 소령원은 현존하는 원 중에서 가장 먼저 원으로 승격된 무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보존되어 있으며, 게다가 무덤을 묘제에서 원제로 변경하는 과정을 살필 수 있는 기록들이 현존한다. 소령원의 새로운 형식은 이후 묘제에서 원제로 승격하는 무덤형식의 典範이 되었다.

현재 소령원에는 재실이나 전사청은 남아 있지 않지만 그 외의 건축물은 물론 석의물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우선 소령원 입구에는 신도비가 비각 속에 세워져 있는데, 원제로 조성된 무덤의 신도비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웅장하며 특히 귀부의 조각 솜씨가 돋보인다^{도7}.³¹ 園所에는 입구에 홍살문이 있고 향어로의 동편 가까이에는 수복방이 있으며, 한 단 높은 정면의 정자각과 그 사이 소령원비의 비각은 짜임새 있는 공간을 이루고 있다. 정전 3칸과 배위청 2칸의 5칸 정자각, 3칸의 수복방은 원의 기본 제도와 같지만, 승원 이전 묘제에서는 정자각을 세우지 않고 祭廳에서 제사를 지냈다. 정자각 뒤에는 신교가 있으며, 신교 서편 예감 자리에는 통석이 놓여 있다. 동쪽으로 사초지를 올라가면 원상에 이르기 전, 중간 부분에 소령묘비 비각이 있다. 원상에는 사대석이 없이 龍尾를 지닌 봉분이 있고 봉분 앞에는 묘제를 따른 표석, 혼유석, 상석, 향로석이 묘제석물로서 일식을 이루고 있다^{도8}. 봉분 주변에는 석양과 석호가 1쌍씩 바깥을 향해 있어 봉분을 수호하는 형국이고, 그 밖으로

³¹ 왕으로 즉위한 영조는 어머니 숙빈의 존봉에 관한 예를 논하면서, 이광좌가 象石을 증설할 것을 청하자, “象石은 굳이 증설할 필요가 없다. 듣건대, 宣祖 때에 仁興君의 어머니인 靜嬪의 묘에 신도비가 있다고 하니, 나 또한 사친의 묘에 신도비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돌을 채취하려면 아마도 백성을 괴롭힐 것 같으니 有司로 하여금 그 값을 후하게 치르고 매수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영조실록』, 영조 즉위년(1724) 9월 21일조). 그리고 『영조실록』 1725년 3월 18일 조에는 신도비의 화강암을 운반하는 데 1만 명이 모자라서 더 추가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표2 원의 진입 및 제향 공간 축조물

	園名	재실	정자각	수라간	수복방	비각	홍살문
1	순창원	없음	5칸	없음	없음	없음	있음
2	순강원	있음	5칸	없음	없음	2기	있음
3	소경원	없음	기단부	없음	없음	없음	있음
4	영희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	소령원	있음	5칸	없음	3칸	3기	있음
6	수길원	-	基址	없음	基址	없음	있음
7	의령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8	수경원	없음	5칸	없음	없음	1기	없음
9	효창원	없음	祭廳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	휘경원	없음	5칸	基址	基址	1기	있음
11	홍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2	영휘원	있음	5칸	없음	없음	1기	있음
13	승인원	-	5칸	없음	없음	1기	있음

는 곡장이 둘러져 있다. 봉분 앞으로는 계체석으로 구분하여 한 단 아래의 가운데는 장명등이, 좌우로는 망주석, 문석인, 석마가 각 1쌍씩 차례로 배설되어 있다^{도1}. 현재의 모습을 바탕으로 묘제의 의물과 원으로 추봉하면서 추가된 의물을 구분할 수 있다.

현재 소령원의 건축물 중에서 정자각, 수복방, 새로 건립한 표석을 위한 비각, 신도비각이 원으로 추봉하면서 추가로 건립된 것이다. 원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왕릉의 체제와 비슷하지만 규모 면에서 축소되어 있다. 13기 원에 현존하는 건축물들을 정리하면 표2와 같은데, 제례공간인 정자각이 남아 있는 경우는 절반밖에 되지 않고 수복방은 소령원에만 보존되어 있다. 재실은 순강원과 영휘원에서만 볼 수 있으며, 수라간은 한 곳도 보존되어 있지 않다. 홍살문은 건립 연도 및 원형의 파악조차도 어렵다. 게다가 의령원^{도9}, 효창원, 수경원 등은 후대의 이장으로 인해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2. 園制 무덤의 석물

능과 원의 공간구성은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석물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분명한 차이는 봉분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설치하지 않았고 무석인이 없으며 석수의 수를 능의 1/2로 줄인 점이다. 이러한 원의 석물체제의 형성은 단순히 능을 기준으

9
의령원
1752년
경기도고양



로 삼고 그 규모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세자묘와 관련성이 깊다.

원의 체제가 세자묘의 형식과 관련된 것은 영조 29년(1753) 소령원을 조성하면서 부터이다. 영조가 소령원을 봉원할 때, 한 해 전에 조성된 의소묘의 예를 따르고 하였기 때문이다.³² 의소묘는 세자가 아닌 세손의 묘이지만, 1728년에 영조의 맏아들 효장세자의 등락을 참고로 도감을 설치하여 세자의 묘와 동일하게 조성했다.³³ 세자묘의 체제를 따른 원제의 체제는 소령원 이후 모두 이에 준하여 석물을 추가로 배설했는데, 후궁의 묘에서 원으로 추봉된 순강원(1755), 수경원(1899) 등이 이 경우다. 현존하는 원 중에서 가장 먼저 원으로 승격된 무덤일 뿐만 아니라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소령원의 석물을 통해, 묘제에서 원제로 추봉하면서 추가된 석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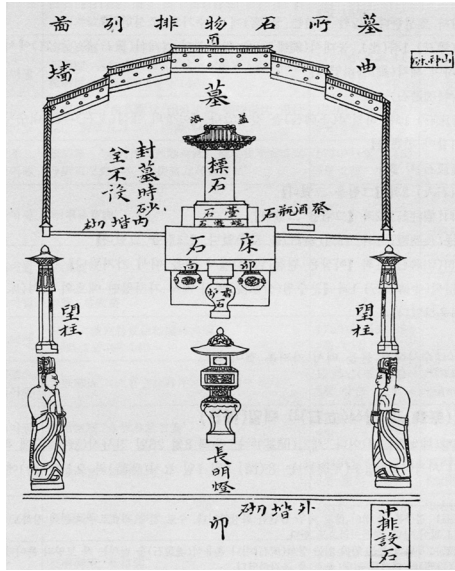
우선 소령원의 묘제 석물에 대해서는 1718년 숙빈묘의 조성에 관한 기록인 『祭廳及石物造成時瞻錄』의 〈墓所石物排列圖〉^{도10}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³⁵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묘제 석물을 정리하면, 표석, 상석, 고석, 혼유석, 향로석, 문석

32 『(소령원)상시봉원도감의궤』(1753), 「대부석소」. “石物體樣一依懿昭墓例舉行”. 의소묘는 의령원이 추봉된 후에 현재 중앙여고 자리에 있다가 1949년에 파주삼릉 능역으로 이장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렵다.

33 『의소세손묘소도감의궤』(1752), 「대부석소」.

34 『상시봉원도감의궤』 참조.

35 『祭廳及石物造成時瞻錄』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다. 첫 부분에는 제정의 규모와 석물의 수량을 기록한 후, 각 과정의 택일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은 도설 부분으로 墓所石物排列圖와 祭廳圖가 그려져 있다. 전자에서는 각 석물의 규모를, 후자에서는 호조와 內司에서 분담한 건축자재들을 수량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石物祭廳時各項條件”이라 하여 공사와 관련된 각종 사항을 작업순서대로 기록하였다.



10
소령원 (墓所石物排列圖)
『祭廳及石物造成時瞻錄』
1718년
장서각 소장

11
의령원 석호(위)
1752년
경기도 고양
소령원 석호(아래)
1753년
경기도 파주

인, 망주석, 장명등, 제주병석, 중배설석이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신도비가 1725년에 세워졌다. 또 『淑嬪上諭封園都監儀軌』의 기록을 통해 1753년에 소령원으로 승격시키는 과정에서 석양, 석호, 석마, 그리고 신 표석, 망료석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원래 석물을 그대로 두고 추가로 석물을 배설했기 때문에 현재 소령원에는 두 종류 무덤의 석물이 공존한다^{표3}. 다시 말해, 제례공간인 정자각이 새로 건립되었지만 묘제의 제례를 위한 석의물인 상석, 향로석, 제주병석, 중배설석은 그대로 남아 있다. 원래의 혼유석을 그대로 둔 채 상석을 혼유석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 그 명칭을 변경하면서 전면에 ‘卯向’이라는 묘의 좌향을 새겨 넣었다. 소령원의 상설제도 역시 의소세손의 의소묘에 따라 정해졌다. 소령원의 석마, 석양, 석호의 추가 석물의 조각이 1752년에 조성된 의소세손(1870년에 의령원으로 추봉)의 석수와 양식상으로 일치하는데, 이는 이 석물들이 동시대 조성되었음을 의미한다^{도11}.

소령원의 원제 석물은 이후에 봉원하는 석물의 典範이 되었다. 1755년에 추봉된 순강원도 광해군 5년(1613)에 묘제로 조성된 무덤에 3종류의 석수를 1쌍씩 추가하는 형식으로 원제로 승격되었다^{도12}. 현재 순강원에는 특이하게 동자석 1쌍이 배설되어 있는데, 이는 묘제 석물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원제 석물을 추가로 배설했기 때문이다. 이후에 조성되는 園所에도 지속적으로 석수들을 1쌍씩만 배설하면서 원제 석물의 특징이 되었고, 정조 역시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석수들을 1쌍씩만 배설했다. 특이하게도 현릉원(용릉)에는 원제 석물에 없는 병풍석과 와침상석이 설

표3 소령원의 象設

명칭	수량	크기 (cm)		재료	제작년도	비고
		표석	크기			
비석	4	표석	230×115×80	화강석	1718	비신 133×59×26
		묘비	290×124×100	오석+화강석	1744	비신 158×58×46
		월비	275×139×100	오석+화강석	1753	비신 182×75×37
		신도비	귀부 121×313×457	오석+화강석	1725	비신 245×99×44
구혼유석	1	15×105×44	화강석	1718		
혼유석	1	35×159×97	화강석	1718	墓制의 床石	
고석	2	28×∅39	화강석	1718		
향로석	1	47×43×42	화강석	1718	4각 향로	
망주석	2	柱身 높이 164	화강석	1718	좌승우강 세호	
장명등	1	217×93×93	화강석	1718	4각 장명등	
석양	2	69×122×39	화강석	1753		
석호	2	60×92×43	화강석	1753		
석마	2	81×145×42	화강석	1753		
문석인	2	175×67×55	화강석	1718	양관조복	
중배설석(35×164×98cm), 제주병석, 봉분에 용미 있음						

치되어 있는데^{도13}, 원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병풍석이 설치된 것은 사도세자의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정조가 특별히 조성한 것이다.³⁶ 당시 정조는 앞으로 이변 일의 예를 끌어다 “병풍석과 난간석에 관계되는 석물은 절대로 다시 쓰지 말도록 하라”고 누차 강조했다.³⁷

IV. 청나라의 ‘園寢’제도

조선왕실 무덤의 ‘園’의 독자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와 유사한 중국의 장묘

³⁶ 현릉원을 용릉으로 능호를 올린 것은 1899년에 고종이었는데, 이때 석물을 새롭게 추가하지 않았다. 용릉의 조성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이순, 앞의 글(2008. 12) 참조.

³⁷ 『홍재전서』 제58권, 잡저 5, 원침을 옮긴 사실 2, 상설 제3; 『조선왕조실록』 28권, 정조 13년(1879) 8월 16일조.



12
순장원
1755년 경기도남양주



13
현릉원(용릉) 병풍석과 와침상석
1789년 경기도화성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청나라의 원침제도이다.³⁸ 청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분묘를 墳園 혹은 墳塋이라 불렀고, 황제와 황후의 무덤을 陵 혹은 陵寢이라 하였다. 그리고 妃嬪, 친왕, 공주, 황족 중 작위를 받은 종실 귀족의 무덤을 통칭하여 園寢이라 불렀다.³⁹ 즉 능과 묘 사이에 원침이라는 역대 왕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일종의 특수한 喪葬制度의 등급을 만들었는데, 원침이 바로 조선왕실의 원에 상응하는 등급이다.

청나라에서 원침제도가 확립된 시기는 순치 원년(1644)에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이후로, 청나라 초기의 '東京陵'의 변성과 쇠퇴의 과정에서 원침제도의 확립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청 태조(누르하치, 1559~1626)가 1624년에 그의 祖父 景祖, 父 顯祖, 伯父, 叔父, 동생, 아들 褚英 등의 무덤을 요녕성에 천장하여 '東京陵'이라 불렀다. 태조가 죽은 후 아들 태종(1592~1643)은 태종 3년(1629) 2월에 심양에 태조의 福陵을 조성하고 태조의 부인 2명을 동경릉에서 옮겨 북릉에 합장했

³⁸ 중국의 '園寢제도'에 관한 연구는 宋大川·夏連保, 『清代園寢制度研究』(文物出版社, 2007) 참조.
³⁹ 晏子有, 『清東西陵』(中國青年出版社, 2004), p.67.



14
清 동경릉
중국 요녕성



15
청 태릉비 원침
청서릉
(望天星外, 『明清帝后陵』,
中國世界語出版社, 1997,
p.137)

다. 순치 15년(1658)에는 태조의 조부와 부친 가족들의 무덤을 동경릉에서 다시 옛 興京陵으로 천장했다. 그 결과, 동경릉은 태조의 친동생과 아들만 남게 되어 묘역의 급이 낮아졌고, 순치 16년(1659)에 흥경릉을 永陵이라 개칭하자, 동경릉은 완전히 조상묘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조정에서는 동경릉에 황제릉에 해당하는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았고 祀典도 폐지하면서 실질적으로 급이 낮은 '원침'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대신 영릉의 위치가 높아지고 '능침'과 '원침'에 등급의 구분이 생겼다. 따라서 후대에서 '능'으로 불리긴 하지만 동경릉은 실질적으로는 원침에 해당된다⁴⁰.

청나라에서 원침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황제의 후궁과 아들, 봉작한 종실귀족, 황후와 비빈 소생 공주와 부마로, 원침에는 神橋, 碑樓, 宮門, 享殿, 月臺, 寶頂, 圍牆 등이 건립되었다. 『大清會典事例』에는 원침의 관리 조직구성, 원침 조성 비용 지출, 원침 비석제도, 건축, 守墳戶 수량 등, 원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보인다.⁴⁰ 예를 들어, 원침 비석제도 규정 중에 비석의 碑首 규정을 보면, 친왕은 蛟龍에 높이가 4.5척, 친왕세자와 군왕은 蛟龍에 3.9척, 패륜은 蛟龍에 3.6척, 진국장군은 螭首에 3척, 보국장군은 麒麟首 형태로 하고 높이를 2.8척으로 정하여 차등을 두었다.⁴¹ 그러나 비석 외에는 원침의 석물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 이는 원침의 위치가 주로 가족분의 개념인 황제릉의 구역 안에 배장묘로 조성되어 별도의 석물을 배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 세종(옹정제) 태릉에 21명의 비빈의 무덤이 집단으로 조성된 비 원침이 그 좋은 예이다⁴¹. 배장묘를 포함한 황제릉의 구역에는 명나라와

⁴⁰ 순치 10년(1653)에 『欽定大清會典事例』 卷九百四十九 《工部, 園寢規制·墳塋規制》에서 규정함.
⁴¹ 宋大川·夏連保, 앞의 책(2007), pp.175-179.

표4 조선의 園과 청의 園寢 비교

구분	조선의 왕실	청의 황실
명칭	園	園寢
창제	1632년	1653년 『대청회전사례』
대상	사친, 세자, 세손	후궁, 황자, 공주, 봉작귀족
개념	무덤	무덤과 침전
원호	있음	없음
주요유물	석물과 정자각	건축
석물	갓춤	없음
묘실	관곽구조	지하 궁
부장품	明器	實器
배치	단독	복합, 가족분
경계	홍살문	궁문, 園牆

마찬가지로 전체 능역 바깥 입구에 긴 신도가 있고 신도 좌우에 석물이 배치되어 있다. 단, 북경에 있는 태조의 일곱째 아들 饶餘敏親王의 원침(1662년 추봉)과 그 아들 安親王(1689년 졸)의 원침에는 석물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다.⁴²

청 황실의 무덤은 12기의 황제릉, 7기의 황후릉, 그리고 10기의 후비 원침을 포함한 다수의 원침이 있는데, 황태자 원침으로는 유일하게 端慧황태자 원침이 천진시 薊縣에 있다. 건륭황제(1711~1799)의 아들 단혜황태자가 太子密建法⁴³에 따라 1736년에 황태자 책봉을 받았으나 이듬해 아홉 살의 나이에 감기로 사망했다. 1742년에 원침을 조성했는데, 황태자 신분이므로 친왕의 원침보다 규모를 크게 조성하였다. 원래는 삼공석교를 지나서 다리 건너 동측에 神廚庫를 짓고 동서배전과 향전 등이 있는, 일반적인 청나라 원침제도를 따랐으나 현재는 건물 터와 비석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의 원침을 조선의 원과 비교하면 표4와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조선의 원제는 청나라의 원침제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조선 최초의 園인 홍경원은 1626년에 조성되었는데, 중국에서는 1653년 『대청회전사례』에 원침의 규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원침은 조선왕실의 원에 상응하는 등급이지만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인조 연간은

⁴² 요여민친왕의 원침에는 화표, 석인, 석마, 석낙타, 석양 각 1쌍과 석마와 마부가 있고, 안친왕의 원침에는 화표 1쌍, 석인 2쌍, 석마, 석양 각 1기가 있다.

⁴³ 태자밀건법이란, 청나라 雍正帝(1678~1735) 이후 행해진 차기 황제의 결정방법으로, 미리 황태자를 정해 놓으면 황태자를 둘러싼 당파싸움이 일어나고 황태자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황태자를 공표하지 않고, 황태자의 이름을 비밀로 간직했다가 황제가 죽은 후에 개봉 공표하는 방법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삼전도 굴욕(1636)까지 당하던 시기로서 기본적으로 청나라보다는 명나라의 문화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조선에서 청의 원침제도를 주목한 기록은 1908년 흥선대원군의 산소를 봉원하는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⁴⁴ 따라서 조선의 원과 청의 원침은 왕실과 황실의 특수층의 무덤 명칭이며 기본 개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의 상이한 필요에 의해서 창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V. 맺음말

조선왕실의 능, 원, 묘는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능제, 원제, 묘제의 선택 기준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예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조선 초기부터 정해진 五禮儀의 규범을 따라 조성되었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조선의 전통은 물론 중국의 고사를 상고하는 등, 역사성과 더불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가장 적합한 제도를 정립해 나갔다. 원제를 창안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고사를 살피고 참조했지만, 조선의 사정에 걸맞은 독자적인 제도를 창안하여 발전시켜 나갔다.

원제로 조성된 무덤의 피장자는 왕의 사친과 세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왕의 사친 중에서도 생부가 세자였을 경우는 능으로 추봉했으나 방계에서 왕이 된 생부의 무덤은 능으로 조성하지 않았다. 인조가 무리하게 사친의 무덤을 능으로 추송한 것은 예외에 해당한다.⁴⁵ 왕의 생모가 후궁이었을 경우는 모두 園으로 봉했다. 후궁이라 하더라도 왕의 생모가 아닌 경우에는 원으로 추봉될 수 없었다. 따라서 고종 이전에 봉해진 원은 왕의 사친이 묘제로 조성되어 있다가 원제로 추봉된 경우다. 반면 고종이 1870년에 원의 범위를 세자와 세자빈으로 확대하면서 세자(세손 포함)나 세자빈의 신분에서 죽은 경우에도 원으로 추봉되었으며, 1870년 이후에 죽은 세자(원손 포함)나 세자빈, 영친왕의 생모인 순헌귀비의 경우는 당시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원제로 무덤이 조성되었다.

⁴⁴ 청의 원침에 관한 언급은 1908년에 흥선대원군묘를 흥원으로 봉원하는 것에 대한 중추원의장 서정순이 올린 상소문 중에 “今於園號議定 壹遵典慶疏慶之例 實合從先祖之義 而在古漢代悼園 近日清國之海澱園 亦可以旁照而參證矣”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다. 「중추원의장 서정순의 상소를 심의하여 받아들임」 1908년 3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참조.

⁴⁵ 1632년에 예조좌랑을 지내던 李尙質(1597~1633)은 인조가 무리하게 사친을 추송하고자 하는 것을 극간하다가 유배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원제의 창안을 포함하여 끊임없이 諡號 또는 尊號의 尊崇, 追崇은 왕실의 위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왕의 정치적 행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조의 사친 정원대원군에서 시작하여 영조 즉위 초반에 숙빈 최씨의 추숭, 정조의 사도세자의 추숭, 그리고 고종시대의 수많은 추숭을 통해 왕권과 왕통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시각적 사료가 바로 원제로 조성되어 있는 무덤들이다. 특히 왕의 생모였던 후궁들의 무덤은 조선 왕통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다. 이 유물 중에서 석물은 무덤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묘제석물과 왕릉석물 연구의 중간 매개체로 흥미로운 소재를 제공해 준다. 묘제의 석물 양식은 소수의 석공이 조각 양식을 결정했기에 변화가 다양하지만, 왕릉의 석물은 다수의 석공은 물론 화원까지도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전통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원은 왕의 관심사항이지만 조각의 규모가 작으므로 묘제와 왕릉의 중간 성격을 보인다. 즉 개인의 취향이 반영되면서도 왕실의 전통이 유지된 것이다.

조선왕실에서 능과는 달리, 원이나 모는 풍수적 차원보다는 참배하기 편리한 가까운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도성 근방에 조성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적잖은 원이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이장되었다. 1944년에 효창원이 이장되었고, 1949년에 북아현동에 위치해 있던 의령원이, 1970년에는 현재 연세대학교의 루스채플 자리에 있던 수정원이 무분별한 토지 수용에 떠밀려 자리를 내줘야 했다. 특히 의령원은 사도세자의 큰아들 의소세손의 무덤으로, 영조가 세손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 매우 공을 들여 조성하였으며, 영조가 소령원을 조성할 때 참조했던 무덤이기도 하다. 수정원은 봉분과 석물만 이전하고, 제례공간인 정자각은 현재 연세대학교에 남겨진 상태이다. 조선왕실의 원은 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역사성은 능에 못지않으며,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주제어 keywords

조선왕릉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원(園) Won, 소령원 Soryeongwon, 숙빈 최씨 King Sukjong's royal concubine Choi, 궁원제(宮園制) Gungwonje, the practice of establishing special shrines and low level mausoleums, 석물 stone sculpture

투고일 2015년 8월 10일 | 심사일 2015년 8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5년 9월 7일

참고문헌

사료

『승정원일기 *Seungeongwon Ilgi,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조선왕조실록 *Joseon Wangjo Sillok,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弘齋全書 *Hongjae Jeonseo, Writings of King Jeongjo*』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1601) *Ui-inwanghu Salleung Dogam Uigwe, Records of the Royal Tomb Office of Queen Ui-in*』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1659) *Hyojong Yeongneung Salleung Dogam Uigwe, Records of Yeongneung Royal Tomb Office of King Hyojong*』
 『효종영릉천릉산릉도감의궤(1673) *Hyojong Yeongneung Cheolleung Salleung Dogam Uigwe, Records of the Royal Tomb Office for Relocation of Yeongneung for King Hyojong*』

논저

김이순 Kim, Yisoon, 『대한제국 황제릉 *Imperial Tombs of the Great Han (Daehan) Empire*』, 소와당 Seoul: Sowadang, 2010.
 김이순 Kim, Yisoon, 「용릉(隆陵)과 건릉(健陵)의 석물조각 Tomb Sculptures of Yungneung and Geolleung」, 『미술사학보 *Reviews on the Art History*』 31, 2008. 12.
 양관 Yang Kuan, 장인선, 임대희 옮김 Translated by Jang Insun, Lim Daehee, 『중국역대 陵寢制度 *History of Tomb Burial Systems in China*』, 서경 Seoul: Seokyeong Publishers, 2005.
 임민혁 Yim, Min-hyeok, 「조선후기 영조의 孝悌 논리와 私親追崇 Yeongjo's Filial Piety and Fraternity Theory and Raising his Real Mother's Rank in the Late Joseon Dynasty」, 『조선시대사학보 *The Journal of Joseon Dynasty History*』 39, 2006.
 정경희 Jung, Kyung-Hee, 「朝鮮後期 宮園制의 성립과 변천 The Practice of Establishing Special Shrines (宮) and Low-level Mausoleums (園), and Changes Made to That Practice during the Latter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서울학연구 *Journal of Seoul Studies*』 23, 2004.
 黃廉 Huang Lian, 『中國歷代帝陵 *Imperial Tombs in the History of China*』, 大連: 大連出版社 Dalian: Dalian Press, 1997.
 宋大川, 夏連保 Song Dachuan, Xia Lianbao, 『清代園寢制度研究 *A Study*

on Burial Practices of the Qing Dynasty』, 北京: 文物出版社 Beijing: Cultural Relics Publishing House, 2007.

晏子有 Yan Ziyou, 『清東西陵 *East and West Imperial Tombs of the Qing Dynasty*』,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Beijing: China Youth Press, 2004.

ABSTRACT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Won(園) Tombs of the Joseon Dynasty

Kim, Yisoon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formation of Won (園) tombs, a unique burial type of the Joseon royal family, and its characteristic features. Won is a particular type of tomb which do not previously appear in Korea or China, occupying the status level in between the royal tomb 'neung (陵)' and the common tomb 'myo (墓)'. It is less extensive than a royal tomb, but much more formal than a common tomb. Won did not exist from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but was invented by King Injo who wished to honor his deceased parents after he ascended the throne through a coup d'état.

The first Won created by Injo soon disappeared because it became upgraded to a neung, but King Yeongjo took up the practice to honor his mother, who was the royal concubine of King Sukjong. King Yeongjo established his mother's tomb as a Won and upgraded her shrine from being a Myo (廟) to a Gung (宮), and established the unique system of 'Gungwonje (宮園制)' for the shrine and tomb. King Gojong reformed this gungwonje system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expanded the scope of royals whose status was eligible for a won rather than a myo. Not only the biological parents of the king belonged to this category, but tombs and shrines for the crown prince, princess, and crown grandson were also recognized to be higher in status than those for normal royalty. As a result 21 won were created within the Joseon royal family, and 15 of them still remain intact till this day.

The spatial arrangement between a neung and a won are basically very similar but the tomb mounds in won do not have retaining stones or stone guardrails. The differences can also be seen in the number of stone figures. Won do not have stone

statues of military officials, and only have one pair of stone horse, sheep and tigers placed by the tombs mound, just half the number of stone statues which can be found in royal tombs of neung. Although the size of Won are much smaller than neung, they were established only in cases where the king came from a collateral line of family, or if the king's birth mother was a concubine, or if the crown prince died early before ascending the throne, and therefore are valuable historic material in reading the history of royal lineage of Joseon.